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가단2406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주

변 론 종 결 2021. 1. 14.

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서 2019. 2. 22.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25. 접수 제319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전전 양수하여 201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1120호로 ‘72,352,898원 및 그 중 31,472,02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당시 D은 여동생인 피고의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로, 피고가 그 거주지에서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수령하였다.

나. 2019. 1. 19. F이 사망하자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인 G, H, D, 피고, I은 2019. 2. 22.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5 지분을 피고에게, 각 1/5 지분을 G, H, I에게 각 분할하기로 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하고, 2019. 2. 25.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위 상속재산은 D의 유일한 재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D과 피고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하여 D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D의 여동생인 피고가 거주지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송서류를 수령하였고 당시 D은 피고의 거주지에 전입신고도 마친 상태였으므로 D은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하여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 의사 역시 인정된다. 비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D이 외국에 장기간 체류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위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을 제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1 내지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F의 남편 J가 매수하면서 1994. 9. 2. 주식회사 K으로부터 돈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합계 17,700,000원을 부담한 사실, 2007. 1. 31. J가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은 F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한 사실, F은 2007. 7. 19. 주식회사 K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07. 7. 23. J가 설정한 위 선순위근저당권을 해지한 사실, 이후 F은 2012. 7. 23.까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상환하였는데, 그 대출원리금은 모두 피고와 그의 남편 L이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그밖에도 D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이 F을 부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피고가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피고의 기여분을 공제하고 여기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적용하여(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이 타당하다. 그에 따르면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동일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경우 D만 상속분 전부를 포기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으로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피고의 기여분을 정하여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숙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M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N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10가구)

1층 133.07㎡

2층 133.43㎡

3층 133.43㎡

4층 115.36㎡

지층 133.07㎡

옥탑 11.52㎡

(면면적제외) 물탱크실, 계단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강서구 M 대 27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제2층 O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66.2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271분의 29.85

위 부동산 중 5분의 1지분

1) 청구취지에는 ‘2019. 1. 19.’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원인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2019. 2. 22.’의 오기임이 분명하다.